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본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베뢰아 사람들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기초하여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에 관련된 학술의 이론과 실천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신학과 목회를 조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도적 권능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전문목회자들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1.)

제2조(교육목표) 본교의 교육목표는 신령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신학에 능통한 사람, 어학에 능통한 전문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제3조(과정) 본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을 둔다. 연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10.2)

제4조(학과, 학위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와 입학정원 및 학위수여 종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19.)

과정	학과	학위구분	학위	입학정원
석사학위	신학과	학술학위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	35
		전문학위	일반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	
박사학위	신학과	학술학위	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5
		전문학위	신학박사 (Doctor of Theology)	
			목회학박사 (Doctor of Ministry)	
			선교학박사 (Doctor of Missiology)	
			기독교교육학박사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상담학박사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제5조(수업) 본교의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수업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9.1.)

제2장 학사운영기간

(개정 2018.2.1.)

제6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 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7조(수업일수와 휴업일) 수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2.1.)
- ②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휴업 일에도 필요한 때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1. 하기방학, 동기방학, 주일과 국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 ④ 비상재해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학위과정(목회학 : Master of Divinity): 6학기 (파트타임 학생 : 12학기).
(개정 2018.2.1. / 2022.1.14.)
- ② 석사학위과정(일반신학 :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4학기 (파트타임 학생 : 8학기).
(개정 2022.1.14.)
- ③ 석사학위과정(신학 : Master of Theology): 4학기
- ④ 박사학위과정 : 6학기

제8조의1 (수업연한의 단축)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 ① 석사학위과정 : 1년 이내
- ② 박사학위과정 : 6개월 이내
- ③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조기졸업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목회학) 10학기, 석사학위과정(일반신학) 8학기, 석사학위과정(신학) 8학기, 박사학위과정 14학기 이내로 제한하며, 파트타임 학생은 석사학위과정(목회학) 16학기, 석사학위과정(일반신학) 10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11.10.19. / 2022.1.14.)
-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한다.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된다.
- ④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개정 2018.2.1.)

제10조(입학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도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지원자격)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 / 2018.2.1.)

-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소속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자
 - 2. 목회학석사학위과정 및 일반신학석사학위과정은 4년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동등 학력 소지자
 - 3. 신학석사학위과정(Th.M.)은 공인된 목회학석사(M.Div.) 소지(예정)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신설 2011.10.19.)
 - 4. 박사학위과정은 M.Div.(또는 동등학력 소지자)와 Th.M. 학위 소지(예정)자, 성서신학전공 시 고 급히브리어 또는 고급그리스어 수준구비, 영어 필기/구두시험 합격자, 석사학위 논문 또는 15-20 페이지 학술논문제출(개정 2011.10.19.)
- ② 본교 연구과정 지원 자격은 연구생·위탁교육생으로 한다.
- ③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침례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소속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자
 - 2. 4년제 대학졸업 또는 동등과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인정된 자
- ④ 본교는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거나 목회자 연수를 위해 연구과정에 위탁교육생의 입학 허가를 행 할 수 있다.

제12조(편입학) 본교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편입학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재입학) 재입학은 다음과 같다.

-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원학기 이하에 한하여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분 된 자와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 재입학은 1회로 제한한다.
- ④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공고한다.

제15조(입학지원상실) 지원자가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기일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그 지원이 실효된다.

제1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별전형을 행할 수 있다.
- ② 입학허가에 고사 성적 외에 다음 사항을 참작한다.
 - 1.면접고사 2.신체검사 3.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제18조(입학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19조(입학허가취소) 입학허가 취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등록과 지정된 제반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② 입학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20조(등록) 학생은 본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제4장 전공제도

제21조(전공) 전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10.2.)

제22조(전공변경) 학생의 전공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공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8.25)

제5장 휴학·복학·제적·퇴학

(개정 2018.2.1.)

제23조(휴학 및 제적) 휴학 및 제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4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거나,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학생 혹은 여학생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3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9.1.)
-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예외 사항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2.)
- ③ 등록기간 중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 ④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에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⑤ 재학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제적된다.
- ⑥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업 및 경건 생활에 불성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무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일정하지 않은 자.

제24조(복학과 복적) 복학과 복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 복적은 1회에 한한다. 단,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2.1.)

제25조(퇴학) 퇴학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원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퇴학원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한 학생은 총장이 휴학 또는 자진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교과와 이수

(개정 2018.2.1.)

제1절 교과과정

제26조(교과목)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본교의 교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공통필수 등으로 구분한다.
- ② 교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의하며,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이수단위) 교과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3.2.1.)

제2절 수업

제28조(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9조(수강신청) 학생은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은 소정기일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개정 2007.10.2)
- ② 일단 승인된 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학과목 등록 후 4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신청된 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교과목 성적을 F로 한다.
- ④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해당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1조(시험) 시험은 다음과 같다.

- ①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7.10.2.)

제32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업성적은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학습태도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 ③ 패스 과목의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이수, Pass)와 NP(미이수, Non-Pass)로 평가한다. (개정 2013.2.1.)
- ④ 추가시험 성적은 B+급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절 이수와 인정

제33조(학점인정)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19.)

등급	평점	점수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D+	1.5	65 - 69
D	1.0	60 - 64
F	0	59이하

- 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수업한 총 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③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학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이 종전에 이수한 학과, 내용 또는 학업성적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은 매학기 석사학위과정(목회학) 최소 2학점, 최대 22학점, 석사학위과정(신학) 최소 3학점, 최대 10학점, 석사학위과정(일반신학) 최소 2학점, 최대 18학점, 박사학위과정 최소 3학점 최대 10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학기의 경우에는 최소학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개정 전 입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3.2.1. / 2015.2.1./2022.1.14.)
- ② 본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졸업학점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1. 석사학위과정(목회학) - 85학점(개정 2011.10.19./2022.1.14.)
 - 2. 석사학위과정(일반신학) -36학점(신설 2011.10.19.)
 - 3. 석사학위과정(신학) - 30학점
 - 4. 박사학위과정(Ph.D) - 40학점
 - 5. 박사학위과정(신학/선교학/목회학/기독교교육학/기독교상담학) - 32학점(신설 2009.8.25. / 개정 2013.2.1.)

제35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7장 졸업과 학위

제36조(졸업학점) 본교를 졸업하려면 졸업학점을 취득함과 동시에 평균평점 2.0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7조(졸업시기) 졸업시기는 전기 졸업과 필요시 후기 졸업으로 나눈다.

제38조(학위수여) ① 본교의 소정기간을 수학한 후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각 과정의 별도 요건(시험 또는 학위논문 심사 등)을 취득한 후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단, 성경시험,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2.1.)

- ② 각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충족한 자만 졸업사정대상으로 인정된다. 단, 졸업사정은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2.1.)

제39조(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

제40조(학위논문)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10.2.)

- ① 학위논문 제출 시기는 재학연한 중 3회에 한한다.
- ② 학위논문 작성,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 ③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최종 졸업연한 초까지 위촉되어야 한다.
- ④ 논제는 지도교수와 합의 후에 졸업 1년 전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 받은 후 작성된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다.

제41조(학위기) 석사 및 박사학위는 본교의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수여한다.(개정 2007.10.2.)

제8장 포상과 징계

제4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귀감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상을 줄 수 있다.

제43조(징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퇴학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2.1.)

- ① 성행이 지극히 불량한 자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 ③ 시험(숙제포함)에 부정행위를 한 자
- ④ 불건전 활동 및 교규를 문란케 한 자
- ⑤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9장 납입금

제44조(입학금) 입학(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등록 시에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45조(등록기일)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공시)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등록기간 이전에 공시한다.

제47조(과오납) 한번 납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장학금

제48조(장학제도) 본교에 장학제도를 두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택하여 지급한다.

제49조(종류) 장학금에는 본교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 교회나 기타 단체에서 또는 유지 인사들에 의하여 기증된 기금 등이 있다.

제50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케 한다.(개정 2007.10.2.)

제51조(미지급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장학금은 이를 급여하지 않는다.

제52조(지급) 지급은 다음과 같다.

-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 기간 내 소정양식을 학생처에 제출하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7.10.2.)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장 위원회

제53조(대학원위원회 구성) 본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수와 보직교수로 이를 구성한다. 단, 총장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타 관계된 자를 회의에 참석케 할 수 있다.(개정 2018.2.1.)

제54조(대학원위원회 회의)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별한다.

제55조(대학원위원회 소집)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6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각 부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5.2.1.)
8. 기타 중요 사항(개정 2007.10.2.)
9.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57조(대학원위원회 회의록) 대학원위원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케 한다.

제58조(대학원위원회 성원) 대학원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07.10.2.)

②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7.10.2. / 2009.8.25.)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10.2. / 2009.8.25.)

③ 대학평의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10. 2.)

제60조(교무위원회)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촉위원을 참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0. 2.)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무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7.10. 2.)

1.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학사력에 관한 사항
4. 대학 발전 계획 및 대학 학사 개혁에 관한 사항
5.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6. 전공 정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설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개정 2007.10. 2.)

제61조(기타위원회) 기타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① 총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재정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0.2. / 2018.2.1.)
- ② 각 위원회의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10.2.)

제12장 외국인·연구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제62조(외국인, 연구생, 위탁생) 외국인 등 특별학생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 ① 연구과정의 연구생과 위탁생에게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 및 연구과정의 연구생 및 위탁생의 수강 허가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③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학과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학생으로서 학력을 검정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제63조(공개강좌) 본교의 필요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3장 학생활동

제64조(원우회) 원우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0.2.)

- ① 본교는 학생의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우회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7.10.2. / 2018.2.1.)
- ② 원우회 구성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7.10.2.)
- ③ 학생처장은 학생 지도계획을 세우며 개인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개정 2007.10.2.)

제65조(학생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4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66조(부속기관)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도서관 ② 생활관

제67조(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2.1.)

- ① 본교는 대통령령에 의거 도서관을 설치, 운영한다.
- ②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③ 본교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④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전산직원 및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부여 한다.
- ⑤ 도서관은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며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 외 도서관의 예산, 조직, 시설, 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8조(부설기관·연구소)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10.2.)

- ①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개정 2007.10.2. / 2009.8.25.)
- ② 부설연구소 : 한국기독교신학연구소, 교학협력연구소, 상담연구소

제69조(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본교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개정 2016.7.1.)

제15장 자체평가

- 제70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2.29.)

제16장 학칙개정

- 제71조(학칙개정)** ① 학칙 개정안은 총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 ②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공고된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및 상급기관의 공문서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2. / 개정 2009.12.29.)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0.2.)

부 칙

1. 본 학칙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후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단, 제34조 ②항 1,2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학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16. 본 학칙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학칙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